#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13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 : 허 영ㆍ이성윤ㆍ윤준병

주철현 • 박민규 • 전재수

한민수 · 정일영 · 김문수

박상혁 · 장철민 · 위성곤

한정애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 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궁극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7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

##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行政訴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

제37조 중 "取消訴訟"을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으로 한다.

제4장의2(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의2 의무이행소송

- 제44조의2(원고적격)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제44조의3(제소기간) 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상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고, 법령상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

- 제44조의4(소의 변경) 제21조는 의무이행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44조의5(의무이행판결)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결하며,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취소한다.
  -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선고한다.
  - 2.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 여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한다.
- 제44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기속력) ① 행정청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을 이 행하도록 선고한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② 제44조의5에 따라 거부처분을 함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 1항을 적용한다.
- 제44조의7(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44조의5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수소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 제44조의8(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의무이행소송 의 경우에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抗告訴訟) 抗告訴訟은 다음	第4條(抗告訴訟)
과 같이 구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4.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위
	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u>소송</u>
第37條(訴의 變更) 第21條의 規定	第37條(訴의 變更)
은 無效등 確認訴訟이나 不作	
爲違法確認訴訟을 取消訴訟 또	<u>취소소송, 의무</u>
는 當事者訴訟으로 變更하는	이행소송
경우에 準用한다.	
<u> &lt;신 설&gt;</u>	제4장의2 의무이행소송
<u>&lt;신 설&gt;</u>	제44조의2(원고적격) 의무이행소
	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
	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u>할 수 있다.</u>
<u> &lt;신 설&gt;</u>	제44조의3(제소기간) 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
	<u>다.</u>

<신 설>

<신 설>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상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수 없고, 법령상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전에는 제기할수 없다.

제44조의4(소의 변경) 제21조는 의무이행소송을 당사자소송 또 는 의무이행소송 외의 항고소 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 한다.

제44조의5(의무이행판결)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가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판결하며,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취 소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명박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선고한다.

<신 설>

<신 설>

- 2.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을이행하도록 선고한다.
- 제44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기속 력) ① 행정청에 당사자의 신 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존 중하여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 고한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 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 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② 제44조의5에 따라 거부처분 을 함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 30조제1항을 적용한다.
- 제44조의7(의무이행판결의 간접 강제) ① 행정청이 제44조의5 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 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

정한배상을하도록명하거나즉시배상을할 것을명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제 1심 수소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신청의 상 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44조의8(준용규정) 제9조, 제10 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 22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신 설>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 준용한 <u>다.</u>